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 예방 연수 자료



목차

CONTENTS



○ 1부. 선행교육 예방 정책

- I .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
- II .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 III .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 2부. 선행교육 예방 활동

- I . 입학전형과 선행교육 예방
- II .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 III . 학교의 평가와 선행교육 예방
- IV .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1부. 선행교육 예방 정책

- 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
- 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 I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

1. 선행교육 예방 정책이란

의미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정부 정책



목적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정상화 실현



I |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

1. 선행교육 예방 정책이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의미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



* 교육관련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비교

구분	선행교육	선행학습
주체	교육관련기관	학습자
정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

2.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필요성

선행학습

- ✓ 선행학습은 학교의 수업 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 목적에도 어긋나며,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



선행교육을 전제로 한 선행학습 조장

2014년 관련 법률 제정 당시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 수업 실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 출제, 대입 전형의 논술 · 적성 · 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 출제** 등으로 선행학습이 조장된 사례 발생



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

3.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정상화법의 연혁

- ✓ [시행 2014. 9. 12.] [법률 제12395호, 2014. 3. 11., 제정]
- ✓ [시행 2019. 3. 26.] [법률 제16300호, 2019. 3. 26., 일부개정]

특별법

- ✓ 이 법은 특별법으로서 선행교육, 선행학습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

4. 선행교육 Q & A



Q. 01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학기를 넘어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도계획표를 수정하고 정보공시를 해야 합니다.



Q. 02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을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

4. 선행교육 Q & A

Q. 03

선행교육의 정의에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학교는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는 1~3학년 전체가 하나의 학년군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Q. 04

선행교육의 정의에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제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학교교육과정을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학기에 편성된 교수·학습 내용을 1학기에 가르치거나, 다음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이번 학년에서 가르치거나, 상급 학교의 교과목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1부. 선행교육 예방 정책

- 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
- 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 I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01

대학 입학전형

02

학교교육과정

03

지필 /수행평가 및 각종 교내 대회

04

방과후학교 활동

적용 배제 교과

체육, 예술 교과(군)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교과(군)

전문 교과

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선행교육 예방 관련 위반 예시



01.

- ✓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육과정 또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02.

- ✓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03.

- ✓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04.

- ✓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 경우

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2.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책무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



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주요 내용

3. 선행교육 위반 시 민원처리

구분	처리기관	업무처리
① 출제 문제 등에 대한 이의 제기(민원 발생)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 → 학교 처리 결과에 불복 시 교육(지원)청에서 판단(☞②)
② 학교 처리 결과에 불복 시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장학지도 · 조사 및 감사 후 해당 학교에 처리 방안 통보 →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③)
③ 교육감 소속 시·도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 안건 검토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교육(지원)청의 검토서 등을 내부 검토 후 시 · 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결정(필요 시 장학지도 · 조사 및 감사 등 실시)
④ 교육감 소속 시·도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 개최 및 후속조치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개최 →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 시정, 변경 명령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징계의결 요구 -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행 · 재정적 제재



1부. 선행교육 예방 정책

- 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의미와 법적 근거
- 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 I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I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1.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직접적 효과

01. 대학 입학전형(논술·적성·구술시험 등)의 선행 출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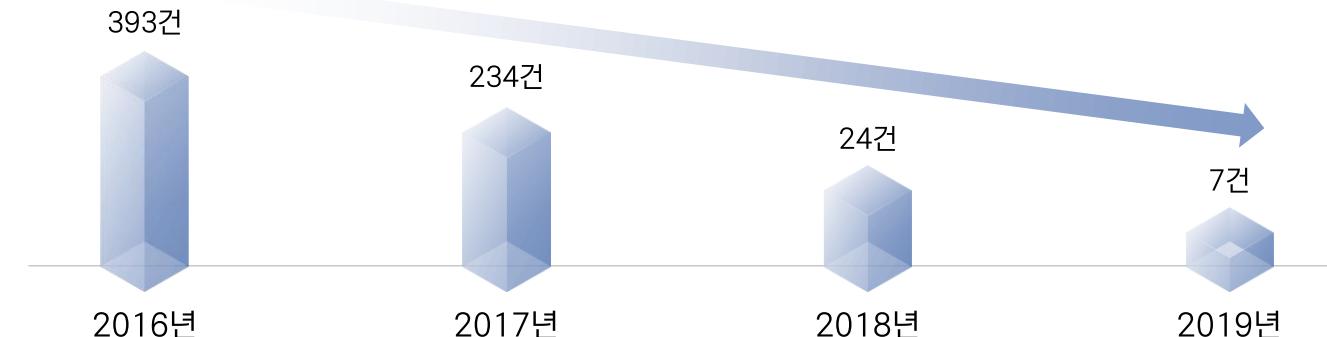
- ✓ 2016년에 비해 2017~2020년에 선행 출제·평가 금지 위반 대학의 비율과 수가 현저히 감소

02.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평가·출제가 현격히 감소

- ✓ 외고·자사고 등 일부 중·고교 입학전형의 선행 출제·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내용의 위반 건수는 2016년에 23건에서 2019년에 5건으로 감소

03.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 방지

- ✓ 학원 등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2016년 393건, 2017년 234건, 2018년 24건, 2019년 7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0).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의 입법영향분석〉



I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2. 고등학교 현장의 선행교육관련 인식 개선



교육과정에 근거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노력

- ✓ 미리 당겨서 가르쳐야만 한다는 부담 감소 및 편법적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감소



교육과정을 준수하는 평가 실시

- ✓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에 대한 부담 감소



III. 선행교육 예방 정책의 효과

3. 대학교의 선행교육관련 인식 개선

01. ✓ 대학별고사의 출제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출제하여, 이를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 감소

02. ✓ 논구술 문항의 지문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여 선행학습 필요성 감소

03. 대학별고사와 관련된 정보 공개

✓ 접근성 확대 및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 대학별고사 대비 가능성 확대(사교육에의 의존도 감소)





2부. 선행교육 예방 활동

- I 입학전형과 선행교육 예방
-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 III 학교의 평가와 선행교육 예방
- IV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I 입학전형과 선행교육 예방

1. 대학별고사의 출제 범위



교육과정 정상 운영

- ✓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적성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 금지

→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대학입학전형을 설계·운영해야 한다는 취지

2.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01. 영향 평가 대상

- ✓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적성고사 등

02. 영향 평가 절차

- ✓ 대학별 자체 보고서 작성

→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분석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I 입학전형과 선행교육 예방

2.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세대, '선행학습법' 위반으로 내후년 신입생 최다 10% 줄어

2017.09.14

| 서울대·연세대 등 11개 대학이 지난해 입시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를 논술·구술 면접 등에서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입시에서 논술·구술 고사에 선행학습 유발 내용을 출제한 대학은 건양대·대구경북과기원·상지대·서울대·서울시립대·안연세대(서울·원주)·울산대·한라대 등 11곳이다. 지난 12곳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달 해당 대학들에게 관통보하고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이날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대학별 모집정지·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하겠다”며 “연속 위반대학은 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인 ‘고기여대학’ 평가 때도 감점하기로 했다.”

연세대·울산대 2년 연속 선행학습 위반…모집정지 처분

2017.09.14

| 논술 등 대학별 고사서 고교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
2년 연속 위반 대학 정원 10%까지 모집정지 가능

연세대와 울산대가 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교육부로부터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연세대·울산대를 비롯해 11개 대학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2부. 선행교육 예방 활동

- I 입학전형과 선행교육 예방
-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 III 학교의 평가와 선행교육 예방
- IV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1. 학교교육과정 편성

01.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학기별 정규 교과 편성

- ✓ 초·중·고등학교는 학년별, 학기별 정규 교과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 및 시·도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시·도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년(군), 학교급 범위 내에서 편성한다.

02. 고등학교 선택과목 편성

- ✓ 고등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내 과목 간 위계를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편성한다.

03. 위계 고려하여 학습 순서 배치

- ✓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교육과정 재구성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한다.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01. 학교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해당 학기에 편성한 교과목을 충실히 운영

- ✓ 학교는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에 비하여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선행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을 일치

02. 학교는 교과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한 학기 내에서도 교육 내용의 위계를 고려

- ✓ 학교는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한 학기 내에서 교과 교육 내용의 순서와 비중 등을 재구성하여 운영
- ✓ 한 학기 내에서 이루어진 편성과 운영의 불일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

03.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 학교는 편성된(공시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교과별 지도계획을 수정하고 수정 사항을 정보 공시에 반영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선행교육 판단 기준



구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교육 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 학생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3. 교육과정 편성 운영 Q & A

Q. 01

한 학기 내에서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학기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닙니다.

Q. 02

동일 교과목을 2개 학기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학기의 학습 내용을 이번 학기를 미리 지도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이 경우 선행교육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다음 학기 학습할 내용을 미리 지도하는 경우,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므로 변경된 진도계획을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Q. 03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에서 선행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의 위계를 고려하여 학습 순서를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에서 단원 순서를 달리하거나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진도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만, 이 때 위계가 있는 단원 간에는 위계가 반영되어 학습 순서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동일 교과목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으며 서로 다른 교과 간 통합 편성·운영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3. 교육과정 편성 운영 Q & A

Q. 04

동일 학년에서 2학기 교육과정을 1학기로 가져 와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진도계획표에 명시하는 등 교육과정 편성을 미리 한다면 선행교육 위반이 아닙니다.

Q. 05

[고등학교] 한 학기 내에서 위계가 있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나요?

A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계에 어긋나지 않게 진도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06

동일 학기에 한 과목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분담하여 지도하는 것도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동일 학기에 한 과목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나누어 지도하는 방식 자체가 선행교육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사 간에 가르칠 단원을 배분할 때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하게 될 학습 순서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의 위계에 적합하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3. 교육과정 편성 운영 Q & A

Q. 07

입학 이전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에 다루어야 할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해도 되나요?

A

입학예정학생에 대하여 입학 전에 상급 학교(입학예정학교)의 교과목을 지도하거나 관련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Q. 08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교육과정 및 정보공시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 09

AP, UP 과정으로 대학 수준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행교육인가요?

A

AP, UP는 대학에서 개설한 특정 과목을 고등학생이 미리 이수하여 대학 진학 후 과목 학점을 미리 취득하는 제도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AP, UP(대학과목 선이수제, Advanced Placement, University-Level Program) : 「고등교육법」 제 23조에 근거하여 고교생이 대학에서 개설한 특정 과목을 미리 들으면 대학 입학 뒤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3. 교육과정 편성 운영 Q & A

Q. 10

학생이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 선행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학생은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졸업 이전에 편성되지 않은 교과목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을 공동교육과정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본인이 소속된 학교의 교육과정과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수강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Q. 11

교육기부로 운영되는 교과(관련) 프로그램도 선행교육의 규제 대상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부는 교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등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Q. 12

교과 관련 동아리활동에서 선행교육이 허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즉 교사가 동아리활동에서 의도적으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등)에 비하여 한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 내용을 지도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해당 학기에 편성·운영되는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범위에서의 심화 학습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요청(수업 시간, 쉬는 시간 중의 질문 등)에 따른 선행요소를 포함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2부. 선행교육 예방 활동

- I 입학전형과 선행교육 예방
-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 III 학교의 평가와 선행교육 예방
- IV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III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1. 학교의 평가 및 교내 대회 관리

01. 학생이 배운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별 진도와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출제 금지

02. 각종 교내 대회에서 교과교육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대회 참여 학생의 학년을 고려하여 교내 대회의 내용을 선정

- ✓ ‘각종 교내 대회’는 학교장 시상 계획이 있는 교내 대회 및 시상 계획 없이 단순 상품만 수여하는 대회 및 공모전 등을 모두 포함



III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1. 학교의 평가 및 교내 대회 관리

평가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구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 가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입학예정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III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2. 평가 및 교내 대회 관리 Q & A



Q. 01

교과 관련 교내 대회에서도 정규 교과 교육과정의 범위를 앞선 문항을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교과 평가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학기를 단위로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02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교내 대회에서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그렇습니다.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학습 유발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학년 구분 없이 실시하는 경우 최저 학년 학생의 교과 진도 계획에 맞추어 출제해야 합니다.



III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2. 평가 및 교내 대회 관리 Q & A

Q. 03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 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다음 학기에 배울 ‘엇각과 동위각’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 학기 단위를 넘어서는 재구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04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할 때 입학 이후의 학습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습니다. 학습한 내용과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입학 전 진단평가에서 입학 이후의 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라면 선행학습 유발행위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학 단계 이전 학교급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부. 선행교육 예방 활동

- I 입학전형과 선행교육 예방
- II 학교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선행교육 예방
- III 학교의 평가와 선행교육 예방
- IV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IV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1. 방과후학교의 편성



학교교육과정에 기반

- ✓ 방과후학교 과정은 학교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편성

→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편성할 경우 「공교육정상화법」에 위배될 가능성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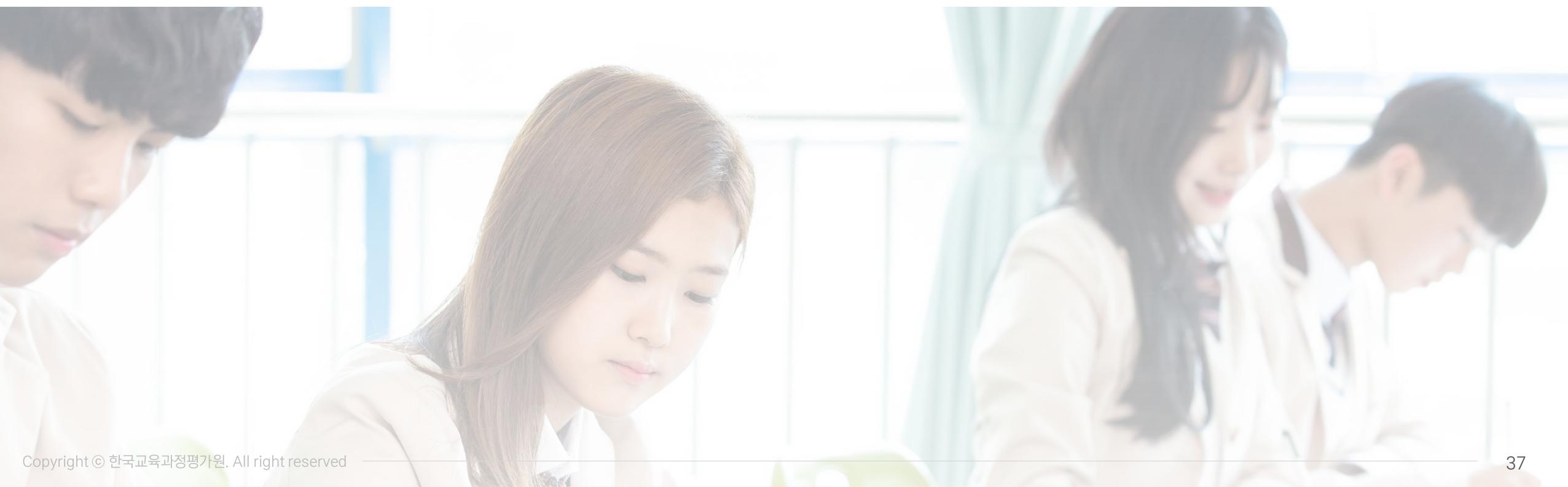
2. 방과후학교의 운영

01. 방과후학교 과정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02.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은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사전에 운영 내용을 인지
03. 방과후학교 교육 내용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평가나 학생 선발 등에 반영 금지
04. 방과후학교 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단위학교 교과서선정위원회의 자문 요청

IV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3. 선행교육 예방 적용 예외

01. ✓ 방학 중 고등학교에서 학기나 학년을 앞당겨 편성·운영되는 경우
02. ✓ 농산어촌 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경우
03. ✓ 법규에 따라 지정된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IV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4. 방과후학교 관련 Q & A

Q. 01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나요?

A

교과 프로그램을 심화·보충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며, 반드시 학생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해야 하고 정규수업을 대신한 교과서 진도 나가기, 상급학교의 교과 프로그램 개설 등 교육과정 정상화를 저해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당해 연도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참조

Q. 02

학교교육과정(공동교육과정 포함)에 편성·운영되어 있지 않은 교과에 대한 소수 학생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고등학교에서 「경제」 과목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않지만 소수 학생들의 개설 요구가 있을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절차를 거쳐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의 위계가 있는 교과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편성·운영되는 선택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앞의 해설 부분에서 제시한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IV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4. 방과후학교 관련 Q & A

Q. 03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국어, 수학, 과학, 영어)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A

최저 학년 수준의 교과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위 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됩니다. 교과 프로그램 외에 독서 논술, 로봇과학 등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의 해설 부분에서 제시한 ‘방과후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Q. 04

어떤 경우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나요?

A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에 따라 고등학교에서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과 농산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된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서는 선행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IV 방과후학교와 선행교육 예방

4. 방과후학교 관련 Q & A

Q. 05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일부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19년 3월 26일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은 소외지역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휴업일 중 방과후학교와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선행교육을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서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06

방과후학교에서 자격증반 혹은 인증 시험 강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A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반드시 당해 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강좌와 관련된 교육내용이나 자격증을 학교 내의 평가나 선발 등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사합니다.

